

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 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1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5년 1월 13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봉사과장 박상설)

□ 제안이유

-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(2004. 3. 22, 법률 제7201호)됨에 따라
-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지금까지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·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.(안 제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전액을 보험 회사에서 지불하는지?</p> <p>○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1,000만원 이상 민원사고 발생한 것이 4건 외에는 없었습니까?</p> <p>○ 주민등록등본은 전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신원확인을 할 것인지?</p> <p>○ 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악용 될 소지는 없는지?</p>	<p>○ 보험계약상 1인당 보상액이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.</p> <p>○ 4건 이외에는 없었으며 전국적으로 민원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와 관련 보험가입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.</p> <p>○ 등·초본발급기관은 증명서에 표시 되고 있어 신원확인이 가능하며, 사고는 발급보다는 증발급, 말소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</p> <p>○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보며 민원 업무담당자들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차원입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 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40호
의결 연월일	2005.1.18 (제117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1. 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(2004. 3. 22, 법률 제7201호)됨에 따라
-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지금까지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험·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.(안 제2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가입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가입조례”를 “부천시인감 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”를 “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”로, “인감업무담당공무원”을 “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가입대상)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(이하 “담당공무원”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인감증명의 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
2.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· 공제등가입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· 공제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인감업무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<u>인감업무담당공무원(이하 “담당공무원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</u></p>	<p>부천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</p> <p>제1조(목적)----<u>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20조-----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-----</u></p> <p>제2조(가입대상)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<u>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(이하 “담당공무원”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인감증명의 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</u> 2. <u>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</u>

□ 관계법령

주민등록법

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
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4. 3. 22]

○○시(군·구)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) 이 조례에서 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”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시장(군수·구청장)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○○○○만원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(군수·구청장)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(군수·구청장)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시장(군수·구청장)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시장(군수·구청장)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